

2019년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6. 18.(목), 10:30 ~ 12:00
- 장 소 : 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6명
 - 심의위원 : 박성호(심의위원장), 강상욱, 손승우, 전용준, 정태호, 최승수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전차(제2019-5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

3. 안건상정 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한국저작권보호원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계정정지 시정권고 안건번호 제2019-1호~66호는 복제·전송자가 2018. 9. 1.부터 2019. 5. 30.까지 최소 116개에서 최대 597개까지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한 사안임

- 회의결과

- 계정정지 시정권고 안건번호 제2019-1호~66호는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였으므로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저작물 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 시정권고 가결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5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회의록 10쪽의 저작자명, 저작물명은 비실명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회의록 15쪽의 민원을 제기한 저작권 신탁단체명 공개 여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A 위원 : 신탁단체 명칭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공개해도 될 것임
- C 위원 : 같은 의견임
- 정현순 전문위원 : 민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인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A 위원 : 민원인에 신탁단체도 포함되겠지만 일반 시민들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생각함

- D 위원 : 정확한 법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A 위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원을 제기한 신탁단체명도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B 위원 : 비실명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비실명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호~66호로

심의대상 계정은 총 66개임

반복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는 계정 사용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 계정을 정지하도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고하고자 함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E 위원 : 검토보고서 내용 중 시장대체 가능성에서 최신 저작물을 1월 1일 기준으로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표에 최신 저작물이 '2013년 이후'라고 되어있음
2013년 기준이라면 7년이 넘는 기간인데 5년 이내의 저작물을 판별하는 것인지 별도로 통계를 내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계정정지 시정권고 대상 표에 최신저작물이 '2013년 이후'라고 표시되었는데 이는 단순 오타이며, 2014년 이후가 맞고 수치에는 이상이 없음

- E 위원 : 이전 계정정지 심의에서 1개월 이내의 계정정지 시정권고 조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1개월에서 3개월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계정정지 시정권고한 경우는 없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계정정지를 권고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C 위원 : 계정정지 시정권고가 미만이 아니라 이내이기 때문에 1개월

까지 계정정지를 할 수 있음

- E 위원 : 두 번째 계정정지 대상이 된 경우 1개월 이상으로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의결한 적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계정정지 시정권고에서 기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C 위원 : 저작권법에 계정정지 시정명령은 1개월 미만으로 되어있고 계정정지 시정권고는 내부처리 규칙에 따라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정지 기간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저작권법의 계정정지 시정권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지만 계정정지 시정명령의 기간을 참고하여 계정정지 최소단위인 1개월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과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심의가 이루어 졌음
계정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정정지 시정명령처럼 계정정지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정정지 기간을 계정정지 시정권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음
- D 위원 : 두 번째 계정정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 계정을 정지하고 그 계정이 저작권 반복 침해하는지에 대한 재발 여부를 추적해서 시정권고 제도의 실제 효과를 파악해 볼 것을 제안함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며,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F 위원 : 이의 없음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박성호 심의위원장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계정정지 시정권고는 원안대로 의결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66개 계정에 대해 21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를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박성호 심의위원장이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9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18.

심의위원장 박성호

위원 강상욱

위원 손승우

위원 전용준

위원 정태호

위원 최승수